

<의안번호 제2007-15호>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6. 1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6. 19.

2. 개정이유

거창군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3. 주요골자

- 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9조)
 - 임부 산전진찰비 : 10만원 이내
 - 임신부철분제 : 7개월분 이내
 -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이내
 -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 100만원
 -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 500만원
- 나.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지원대상 : 셋째자녀 이상 만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기준

- 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9조)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중인 셋째이상 자녀
 - 지원금액 : 고등학교 전 학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라. 전입장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내 전입정착금 또는 이사비용, 10만원 범위내 전입기념품, 300만원 범위내 빈집정비 지원금,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전액, 50ℓ 20대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10만원 범위내 전입대학생 장학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전액, 5대 이내의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 등
 - 그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 마.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바. 지원금품 환수조치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 (2) 「지방자치법」 제15조
- (3)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기준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예산조치 : 200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1,300백만원)

다. 입법예고(2007. 4. 4 ~ 4. 23)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동조례안은 최근 거창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젊은 경제활동 인구의 외부유출로 인한 초고령 사회(65세의 인구가 20%이상)로의 진입으로 우리 거창은 사회·경제 등 모든 삶의 질 지표 영역에서 활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으로 민선 4기 군수 취임후 풍족하고 살기 좋은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의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 이상의 인구감소현상을 막고 향후 10만명의 인구가 정주하는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을 목표로 「인구증가정책」을 군정 최대의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써

- 동 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총칙)의 제1조(목적)에서는 동조례의 제정목적과 제2조(구분)에서는 4개의 지원사업(출산장려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장려 지원)을 총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정의)에서는 동조례 시행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소지를 사전 차단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제2장(출산장려 지원)은 현재의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조례』의 내용이 동조례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폐지하면서
 -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이 현재 30만원→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이 현재 100만원→500만원으로 일부 확대 지원토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변경사유와 인근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비교설명이 필요함.

 - 제3장(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제4장(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및 제5장(전입장려 등 지원)에 있어서는 관계법에 의해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명시된 근거는 없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7조(인구정책)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었음.

※ 양육비 지원 조례제정 시행시군 : 6개시군

- 통영시, 김해시, 창원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조례제정 시행시군: 2개시군(사천시, 남해군)

※ 전입장려 등 지원 조례제정 시행시군: 2개시군(남해군, 창원군)

- 남해군 : 전입지원금 30만원, 빈집정비 50만원, 기타

- 창원군 : 전입지원금 미시행, 전입세대 무료설계 지원

○ 그러나 영육아 양육비의 지원기간이 만5세까지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며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